



ILO News Brief

STC 5



제5차 국제노동기구 특별삼자위원회 (이하 “STC”)가 2025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하이브리드 회의로 개최됨.
동 News Flash는 STC 5 주요 사안의 논의결과를 브리핑함.

1. 선상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Violence and Harassment) [의제 1, 12, 13]

선상에서의 성희롱, 괴롭힘, 성폭행의 정의,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및 프로그램 등을 해사노동협약에 신설하기 위하여 선주/선원 그룹이 의제 1, 정부그룹이 의제 12 & 13을 제출.

선상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하여 병합된 의제 12 & 13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여 의제 1은 논의 철회됨.

선원, 선주, 정부 그룹간 워킹 그룹 구성하여 선주 및 정부에게 선상에서의 성희롱, 괴롭힘, 성폭행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및 기밀 유지를 포함하는 해사노동협약의 신설 규정 아래의 각 조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채택됨.

기준 제A4.3조 - 건강 및 안전보호와 사고예방	기준 제A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지침 제B1.4.1조 선원직업소개소의 조직 및 운영 지침	지침 제B4.3.1조 업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규정
지침 제B4.3.6조 조사	지침 제B4.3.11조 국제적 협력

2. 선원 송환 (Repatriation) [의제 2 & 10]

[의제 2]

각 회원국은 선원이 송환 목적 하선 시 비자 또는 특별 허가(Special permit)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무 규정으로 제정하고, 선원이 근로하는 선박의 기국 등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송환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 제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정부그룹은 비자 또는 특별 허가는 각국의 보안, 법무, 출입국 관리 등 공공의 안전 영역에 해당되어 해사노동협약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에 따라 선원/선주 그룹은 선원 하선 시 비자 및 특별허가증을 요구하지 않는 조항을 철회

차기 제6차 특별삼자위원회에서 선원/선주 공동의제로 새로운 의제를 제출하기로 하며, 선원의 차별 없는 송환 촉구에 대한 제안사항은 기준 제A 2.5.1 제10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채택함.

[의제 10]

유기된 선원의 송환과 비교하여 통상적인 선원의 송환 시 보장되는 권리가 약하게 보장되어 있어 권리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최소한 부담하여야 하는 송환 비용의 범위를 기존 권고 지침에서 강행 기준으로 변경 제안

선원과 선주 그룹 합의에 따라 모두 강행규정으로 넣자는 원제안을 수정하여 임금 및 수당 부분은 지침 넣기로 합의 후 다음과 같이 최종 채택됨

기준 A2.5.1 제3항 신설

제2항 (c)호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송환 비용은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선택된 송환 목적지까지의 여비,
- (b) 선원이 선박을 떠난 순간부터 송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숙박 및 식사비용,
- (c) 선원의 개인 수하물 최대 30kg까지의 송환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
- (e) 필요한 경우, 선원이 송환 목적지까지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의학적으로 회복될 때까지의 치료비.

지침 B2.5.1 제3항 변경

기준 A2.5.1 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송환 비용에는, 국가 법령이나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선원이 선박을 떠난 순간부터 송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임금 및 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

3. 핵심근로자 (Key workers) [의제 4]

선원을 핵심인력으로 지정하여 공중 보건 비상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 시 상륙, 송환, 선원 교대 및 필요시 육상 의료 서비스 접근권, 자국 선원의 귀국 인정 등의 권한을 부여

정부그룹의 많은 우려 제기로 인해 선원/선주 그룹이 원개정안을 철회하고 채택된 수정안을 먼저 강행규정으로 넣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부그룹은 반대하며, 강행규정이 아닌 지침으로 넣을 것을 제안하였고, 논의 끝에 지침으로 넣는 것을 합의·채택

4. 근로 및 휴식시간 (Hours of work and rest) [의제 6 & 7]

[의제 6]

기존 해사노동협약에서는 주간 최대근로시간(72 시간) 또는 최소 휴식시간(77 시간)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간 최대근로시간과 맞추어 적절한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고자 최소 휴식시간을 기존 77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을 제안함.

[의제 7]

근무 및 휴식시간의 규정에서 단체협약으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항이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

단체협약으로 예외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제안

선원 그룹과 선주 그룹의 의견차이로 합의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으며, 결의서* 채택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합의

* Resolution concerning the convening of a meeting of the Joint ILO-IMO Tripartite Working Group to identify and address Seafarers' Issues and the Human Element on 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5. 훈련 및 자격증명 (Career and skill development) [의제 8]

선원이 승선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이나 관련 교육을 받는 경우 무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

정부, 선원, 선주 그룹의 의견차이로 개정을 제안한 선원그룹이 제안을 철회하여 최종 채택되지 않았으며, 결의서 작성 후 추후 재논의 합의

6. 최대승선기간 (Maximum period of service on board) [의제 16]

최대승선기간을 '12 개월 미만'으로 규정하던 것을 '11 개월'로 명확화하고 필요시 20 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EU 는 선원의 최대승무기간에 대한 명확화와 DMLC 상에 최대승무기간을 삽입하여 강제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은 최대승무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논의시간 부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채택되지 않음.

제 5 차 특별삼자위원회 결과는 '25.06.02~13 예정된 국제노동총회에서 최종 채택 후 2027년 12월 발효예정임.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심사팀장

담당자: 김서울 수석검사원
Tel: +82 70 8799 8344
E-mail: kr-dmlc@krs.co.kr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